

서울중앙지방법원 2021. 4. 22 선고 2021가단1023 판결 [구상금 청구의 소]

전 문

원고A 주식회사

소송대리인 B

피고1. 주식회사 C

2. D

3. E

변론 종결2021. 4. 1.

판결 선고2021. 4. 22.

주 문

1.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0,394,520원 및 그중 80,000,000원에 대하여 2021. 1. 4.부터 2021. 3. 3.까지는 연 9%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%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.
3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가. 피고 주식회사 C, E에 대하여 :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)

나. 피고 D에 대하여 : 자백간주 판결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, 제150조 제3항)

판사김홍도

별지